



'15년도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주요 개정사항

-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고압법, 위안법을 중심으로-

김 성 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연구원

1. 개요

국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제정 및 개정은 SAICMS1)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이후 국가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입법에 대한 정책이 수립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성상 및 이용목적에 따라 7개 부처가 소관하는 14개 법령에 따라 규제·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화학물질 관련 법규인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고압법 및 위안법의 제정 및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15년 1월 1일 부로 시행된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행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산안법, 고압법 및 위안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과도한 규제 내용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예상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화학물질 이용 목적에 따라 부처별 담당하고 있는 법률별 이행방법이 상이하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 범용 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제도 중 '15년에 중점적으로 제·개정된 5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기업의 이해를 통해 자발적인 법률 대응 전략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2. 주요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내용

2-1. 화평법 개정 주요 내용

화평법은 화학물질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행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국내 주요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주무부처

법령명	주무부처	제정시기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2013.5.22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2013.6.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981.12.3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973.2.7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03.5.29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시행령 제7조, 별표 5)
 -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시행령 제7조 제4항)
 -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 화학물질은 연 단위로 등록면제 확인(시행령 제7조 제4항)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화학물질은 최초 1회만 등록면제확인(시행령 제7조 제4항)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특 집

표 2) 화평법 '15년도 개정 이력 및 내용

'15년 개정날짜	법, 령, 규칙, 고시	번호	주요개정사항	비고
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28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5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8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중정정	
6월 3일	환경부고시	제2015-75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7월 1일	환경부고시	제2015-95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9월 30일	환경부공고	제2015-655호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0월 2일	환경부고시	제2015-197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별표2, 법제2조제3호나목에따른기존화학물질)	
10월 30일	환경부령	제61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월 6일	환경부령	제61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정정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5-394호	유해화학물질 외에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별표 5)을 신설	입안예고
1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9호	등록 신청자료 작성 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2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21호	위해우려제품 유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신규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	

- 비분리중간체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시행령 제 17조제1항)
-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시행령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시행령 별지 제 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2-2. 화관법 개정 주요 내용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 담당자의 업무내용이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과는 관련성이 적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의무 사항을 완화시켰으며, 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등에 필요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였으나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공개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고시하였다.

[표 3] 화학법 '15년도 제·개정 이력 및 내용

'15년 개정날짜	법, 령, 규칙, 고시	번호	주요개정사항	비고
3월 10일	환경부고시	제2015-3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시설별 공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 신설	
3월 10일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정기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	
6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5-5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6월 24일	환경부훈령	제1159호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일부개정 -> 부칙의 적용부분 추가	
8월 5일	환경부고시	제2015-1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	
8월 5일	환경부고시	제2015-124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9월 1일	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9월 25일	환경부고시	제2015-191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2월 29일	환경부고시	제2015-26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2월 31일	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화학법의 제·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통계·배출량 조사 담당자를 삭제하고, 장외영향평가 작성 담당자를 추가(환경부고시 제2015-123호 제2조 개정)

- 화학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어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절차,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명시(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한 기본공개와 공개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공개로 구분(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2-3. 산안법 개정 주요 내용

산안법은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감독, 기술지도 등의 결과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시행규칙안 제86조)

-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많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사항 통지서 통보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에 부담

- 일부 시험성적서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및 고분자화합물 해당여부에 따라



특 점

[표 4] 산안법 유해성 시험성적서 제출(안)

시험성적서 제출항목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10톤 미만	10톤 이상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단,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정)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표 5] 산안법 고분자화합물 제출 항목(안)

시험 성적서 제출 항목	연간 제조·수입량			
	10톤 미만	10-100톤 미만	100-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해당사항 없음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단,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정)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고분자 특성	공통 사항 :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도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제출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치사항 통지서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 전 등록 날짜 축소(시행규칙안 제86조)

· 제86조제1항 본문 중 “45일”을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축소

-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시행규칙안 제86조)

·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성 시험 성적서 제출(안)

· 제조 또는 취급(사용) 방법을 기록한 서류

· 제조 또는 취급(사용) 공정도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제출

[표 6] 산안법 '15년도 개정 이력 및 내용

15년 개정날짜	법, 령, 규칙, 고시	번호	주요개정사항	비고
1월 16일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해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제4항
			제88조 및 제89조의 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 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9조의3(확인 면제)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조사 결과 공표	부칙(안 제91조제1항)
6월 16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186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8월 19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4, 455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조사제도 개선	안 제86조
			제86조제1항 본문 중 "45일"을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을 "별표 11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제1항

2-4. 고압법 개정 주요 내용

고압법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의 적정성에 문제없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단축(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호)
-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의 완화(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7)다) 신설)
- 설계단계검사의 정기적 실시(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1)가) 신설)
 -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설계단계 검사를 매 3년마다 실시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
 -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특 집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권고는 1차 위반행위로 한정

-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 완화(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및 제2호)

·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경우 2년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한 지 2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함.

-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의 연장(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

-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제외(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

·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정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경우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명확하게 규정

- 사업 정지 등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법 제9조의2제1항)

- 고압가스제조사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한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법 제18조의3 신설)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3조의3 신설).

-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함(법 제23조의5 신설).

-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함(법 제23조의6 신설).

- 정밀안전검진 대상의 확대(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최초로 완성 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별로 검진을 받도록 함.

-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 및 품질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26, 별표 27 신설)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등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제조사

(표 7) 고압법 '15년도 개정 이력 및 내용

15년 개정날짜	법, 령, 규칙, 고시	번호	주요개정사항	비고
2월 16일	대통령령	제26104호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점검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지정	시행령 일부 개정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9호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단축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 설계단계검사의 정기적 실시 규정 신설 등 용기 및 용기 부속품의 규정 신설 및 개정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의 완화	시행규칙 일부 개정
5월 6일	법률	제13079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굴착공사의 따른 고압가스배관 파손의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일부 개정
7월 20일	대통령령	제26417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굴착공사의 따른 고압가스배관 파손의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	시행령 일부 개정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고압가스의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굴착공사의 따른 고압가스배관 파손의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 및 안전 교육, 검사 등과 같은 안전을 위한 규정 추가	시행규칙 일부 개정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7호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 정비	시행규칙 일부 개정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02호	고압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 검사주기, 검사기관의 책임보험의 종류 명확화, 고압가스 운반 기준 완화 등에 대한 개정	통합고시 일부 개정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받도록 함.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사업자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시행규칙 제 52조 신설)

- 굴착공사의 개시 통지(시행규칙 제52조의3 신설)

- 정밀안전검진 특수·선택분야의 검진항목 확대 및 검진 의무화(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마목1))

- 정밀안전검진의 특수·선택분야 검진항목

에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등을 포함시키고 특수·선택분야의 검진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함.

-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 완화(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3) 비고 신설)

- 의료용 가스용기 및 소방용 가스용기가 아닌 가스용기가 내용적 2L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

-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명확화(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

- 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운반차량기준,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압축가스의 경



특 점

우에는 1.3m³) 이하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

-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 확대 (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

2-5. 위안법 개정 주요 내용

위안법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2호)

-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함(시행규칙 별표6).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

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함(시행규칙 별표6).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독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독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시행규칙 별표6)

-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시행규칙 별표6).

-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8).

·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시행규칙 별표13).

-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시행규칙 별표18).

3. 맺음말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화평법 ·

[표 8] 위안법 '15년도 개정 이력 및 내용

15년 개정날짜	법, 령, 규칙, 고시	번호	주요개정사항	비고
5월 6일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3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7월 17일	총리령	제1178호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옥외 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	시행규칙 일부개정
12월 15일	대통령령	제26725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 및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 이양	시행령 일부개정

화관법의 규제 내용으로 국내 기업 및 외국기업 까지 과도하다고 우려하였으나, 법률 및 고시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계의 일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다. R&D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제출서류 간소화는 산업계의 R&D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 촉진 및 신제품 양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화평법과 화관법의 중복된 화학물질 보고 내용을 한번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업의 행정 시간과 비용발생 절감이 기대되지만, '16년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 보고 제도가 연이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안법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예고하였지만,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시험비용이 상이해 질 수 있고 여전히 화평법과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등록 및 보고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원활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위해서는 법령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법 및 국민안전처의 위안법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규제가 완화 또는 강화되어 취급시설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취급 및 이용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부처별 관리하는 법령과 이행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은 올바른 법률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 이행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조직적인 체제 변화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K]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